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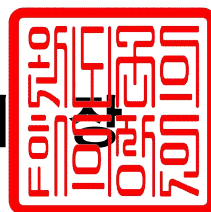
완도군의회 공고 제 2023 - 28호

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7월 7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
관한 조례안
2. 발 의 자 : 조 영 식 의원
3. 제정이유
 - 완도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실태조사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처우개선 사업(안 제6조)
-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, 신청, 지급 결정 및 지급,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(안 제7조 ~ 안 제10조)
-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(안 제11조, 안 제12조)

5. 조례안예고기간 : 2023. 7. 7. ~ 2023. 7. 12.

6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7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
조례안 1부. 끝.

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,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장기요양기관”이란 완도군에 소재하며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.

② “요양보호사”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
2.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

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처우개선 사업)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2.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
3.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4.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5.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)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고 한다)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
2.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(주·야간보호·방문요양·방문목욕)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

보호사

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.

제8조(처우개선수당의 신청)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)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, 수당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·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·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

여금 받게 한 경우

3.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

4.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)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·조치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)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31조(장기요양기관의 지정)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
2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
3.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

4.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

5.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④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.

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